

국내 다중운영체제(맥킨토시와 리눅스를 비롯한 Multi O/S) 데스크톱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법령개선 요구 건의사항.

우리가 정보화시대에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모든 일에 컴퓨터 인터넷 없이는 모든 일이 거의 불가능 할 정도로 마이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집마다, 각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각 책상마다 컴퓨터 1대씩 거의 설치되어 있고 각 개인마다 휴대용 컴퓨터(스마트폰, PDA, 넷북, 태블릿PC) 1대씩 거의 갖추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 웹사이트 및 국내에서 제작 시판되는 사무용 응용프로그램(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그래픽편집프로그램(일러스트, 포토샵 등), 설계 제도용 응용프로그램(CAD프로그램), 각종 악성코드로 부터 개인컴퓨터를 비롯하여 개인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개인정보를 비롯한 각종 업무용 자료(워드문서파일, 엑셀[스프레드 시트] 계산문서파일, 파워포인트[프리젠테이션]문서, 기타 그래픽문서, 사진파일), 도면문서(카드문서)등을 보호하기 위한 백신/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안티스파이웨어)과 같은 소프트웨어 콘텐츠들이 특정업체 소프트웨어(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진정한 IT강국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특정업체 소프트웨어(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에 종속되어 있는겁니까?

우리나라 IT콘텐츠들이 특정기업 소프트웨어(O/S를 비롯한 웹브라우저)에만 종속되어 있는 규제아닌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개인단말기(PC, 노트북, 스마트폰, PDA, 넷북, 태블릿PC) 그에 따른 다중운영체제(MS Windowes, 리눅스[Ubuntu, Fedora 기본] 맥킨토시[Intel, PowerPC 등 맥], 클라우드O/S)등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무시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동안 IT용 하드웨어(통신선로, 컴퓨터에 명령에 따라 이행하는 주변기기(프린터,스캐너, 복합기를 비롯한 사무기기) 컴퓨터에 명령에 따라 산업기기를 제어 할 수 있는 출력제어기기, 그리고 컴퓨터에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넘겨주는 감지 및 센서같은 입력기기, 사람이 컴퓨터에 명령을 입력시키는 수동입력기기[키보드, 마우스를 비롯, 터치패드 디지털터치같은 입력기기], 자료를 처리 하는 컴퓨터기기, 자료를 저리 중이거나 처리된 자료를 저장 백업 할 수 있는 탈착식 스토리지 기기[컴퓨터에서 각종 외부 보조기억매체에 자료를 쓰고 읽는Deck를 비롯, 광미디어, 플래시미디어 같은 외부 보조기억저장기기]) 기기를 제작 및 시판에만 치우쳐져 있고 컴퓨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응용소프트웨어, 웹사이트)들이 특정 업체 소프트웨어(운영체제) 제품에 종속되어 있어 해당 특정업체 소프트웨어(운영체제) 제품을 표적으로 삼는 여러가지 바이러스와 스파이웨어 같은 여러 악성코드에 노출되어 있어 사이버 테러 위협과 같은 IT 보안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만큼 IT콘텐츠 욕성에 소홀히 해왔다는 이야기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 IT콘텐츠(웹사이트, 응용소프트웨어)들은 다중 개인단말기(PC, 노트북, 스마트폰, PDA, 넷북, 태블릿PC)및 그에 따른 다중운영체제(MS Windowes, 리눅스[Ubuntu, Fedora 기본] 맥킨토시[일명 : 맥], 클라우드O/S)등에 제한 없이 사용 할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진정한 IT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IT소프트웨어 콘텐츠를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련된 제도, 법령, 그리고 정책부터 정비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남자로 태어났을 때 부모의 양육 과정에서 성장하면서 학업(초등, 중등 고등학교과정)을 이수하고 만 20세 이상 성인남성이면 군대를 갔다 와야 하는 국방의 의무(병역의 의무)를 무조건 임해야 하며 우리나라 국민이면 무조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 의무가 있듯이 우리나라 모든 웹사이트들, 국내산 토종 응용소프트웨어, 국내산 토종 백신/보안소프트웨어(안티 바이러스, 안티스파이웨어)를 MS Windows용으로 만들었으면 무조건 리눅스(Ubuntu, Fedora 기본)와 애플 맥킨토시용(Multi O/S)과 멀티브라우저(Microsoft Edge, Microsoft IE를 비롯 Mozilla Firefox, Google Chrome, Opera, Apple Sapari)용으로 무조건 만들어야 하는 의무를 부과 하는 법령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내용과 같이 우리나라 모든 웹사이트들, 국내산 토종 응용소프트웨어, 국내산 토종 백신/보안소프트웨어(안티 바이러스, 안티스파이웨어)를 MS Windows를 비롯 각종 리눅스(Ubuntu, Fedora 기본지원), 맥킨토시(일명 : 맥), 타이젠, 등 운영체제(O/S) 및 각종 웹브라우저에 에 의무적으로 호환되게 만들도록 다음 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법령으로 개정 후 입법화가 필요 합니다.

1) 우리나라 모든 웹사이트들을 다중운영체제(Multi O/S) 와 다중브라우저(Multi Web Browser) 에 충족되도록 호환성 의무화에 관한 법 규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우선 먼저 다음과 같은 내용<표1>으로 웹사이트 플러그인(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 제작 할 때 다중운영체제(Multi O/S) 와 다중브라우저(Multi Web Browser) 호환성에 충족 준수하도록 법령 개정 후 입법화 하셔야 합니다.

<표1> 웹사이트용 플러그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대한 법령 개정 요구 건의사항.

프로그램 명	플러그인(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개선하도록 법령 개정 입법화가 필요합니다.
모든 웹사이트용 플러그인(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결제 프로그램, 공인인증프로그램, 온라인방화벽, 웹보안 프로그램, 웹상 문서보안 프로그램, 웹상 특수문서 뷰어 및 인쇄 관련 [온라인상 증명서, 등기부등본, 각종 등초본 및 서류발급 및 조회용 프로그램 2D, 3D 지적도, 도면 등], 웹상 디지털 멀티미디어 보안 [DRM] 프로그램, 등)	MS Windows 용은 Non-ActiveX 방식과 HTML5방식으로 개발 후 상용 의무화 하도록 법령 개정과 동시에 입법화 후
	Fedora Linux 32Bit용과 64Bit용 *.rpm 설치패키지 형태로 Non-ActiveX 방식과 HTML5방식으로 개발 후 상용 의무화 하도록 법령 개정과 동시에 입법화 다음 (Fedora Linux를 비롯한 모든 레드햇 [Redhat] 리눅스 계열)
	Ubuntu Linux 32bit용과 64Bit용 *.deb 설치패키지 형태로 Non-ActiveX 방식과 HTML5방식으로 개발 후 상용 의무화 하도록 법령 개정과 동시에 입법 하시고 (Ubuntu Linux를 비롯한 모든 데비안 [Debian] 리눅스 계열)
	매킨토시(Macintosh) [일명 : 맥]용 설치패키지 형태로 Non-ActiveX 방식과 HTML5방식으로 개발 후 상용 의무화 하도록 법령 개정과 동시에 입법화 하셔야 합니다.

상기 내용대로 이행과 동시에 모든 웹사이트용 플러그인(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은 멀티 O/S(Microsoft Windows, Linux[Ubuntu 32Bit와 64Bit, Fedora 32Bit와 64Bit 기본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Apple Macintosh OS/x[일명 : 맥]), 멀티 브라우저(Microsoft Edge, Microsoft IE를 비롯 Mozilla Firefox, Google Chrome, Opera, Apple Safari 등) 에 호환되는 Non-ActiveX 방식과 HTML5방식에 충족되도록 권장 사항이 아닌 기본 필수업무 사항이 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가 정보화 기본법에 MS Windows 용은 Non-ActiveX 방식과 HTML5방식으로, Fedora Linux 32Bit용과 64Bit용 .rpm (Fedora Linux를 비롯한 모든 레드햇 redhat 리눅스 계열) 설치패키지 형태로 Non-ActiveX 방식과 HTML5방식으로, Ubuntu Linux 32bit용과 64Bit용 deb 설치패키지(Ubuntu Linux를 비롯한 모든 데비안 Debian 리눅스 계열) 형태로 Non-ActiveX 방식과 HTML5방식으로, 매킨토시 (Macintosh) [일명 : 맥]용 설치패키지 형태로 Non-ActiveX 방식과 HTML5방식으로 각 플러그인(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개발 및 제조업체에 기본 의무적으로 개발 배포 하도록 국가 정보화 기본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법령으로 입법 후 이 법령을 각 플러그인(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개발 제조업체에 하달 되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법령을 개정 입법 후 공포 하셔야 합니다.(개정 되었는지 아직 개정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 1) 모든 웹 사이트용 플러그인(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은 Non-ActiveX 방식과 HTML5방식을 지원해야 한다.
- 2) 모든 웹 사이트용 플러그인(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들은 기본 필수적으로 멀티 O/S(Microsoft Windows, Linux[Ubuntu 32Bit와 64Bit, Fedora 32Bit와 64Bit 를 비롯 그외 리눅스] 매킨토시(일명 : 맥) 에 기본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제공해야 한다.
가) Microsoft Windows용 설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나) Ubuntu Linux를 비롯한 데비안(Debian) 리눅스 계열 32Bit와 64Bit 용 *.deb 방식 설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다) Fedora Linux를 비롯한 레드햇(redhat) 리눅스 계열 32Bit와 64Bit 용 *.rpm 방식 설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단 *.bin 설치파일이나 *.run 설치파일 비롯한 기타 다른형식의 리눅스용 설치 파일들은 설치/제거 방법을 해당 웹사이트 사용자(유저)들에게 프로그램 설치/제거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순서별 구체적으로 필히 명시해야 한다.)
라) 매킨토시(일명 : 맥) 용 설치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 3) 모든 웹 사이트용 플러그인(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은 멀티브라우저 (Microsoft Edge, Microsoft IE를 비롯 Mozilla Firefox, Google Chrome, Opera, Apple Safari)에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 4) 모든 웹 사이트용 플러그인(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은 해당 웹사이트 사용자(유저)들에게 프로그램 설치/제거방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순서별 구체적으로 필히 명시해야 한다.
- 5) 모든 플러그인(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들은 Adobe Air(Adobe社) 나 자바런타임(Oracle社 Java)에 의한 설치방식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유: Adobe社의 Adobe Air는 리눅스에서 지원 중단, Oracle社 자바런타임은 설치 실행이 불안정하고 일부 맥에서 지원이 전무 함)
- 6) 모든 플러그인(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들은 모질라 파이어폭스 와 그외 브라우저 부가기능에 의한 설치방식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유: 특정 브라우저에 충족되어 있고,브라우저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된 이유 일부 부가기능이 호환이 안되어 설치가 안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상기 내용<표1>에는 웹사이트용 플러그인(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은 Non-ActiveX 방식과 HTML5방식에 충족하도록 멀티운영체제(Microsoft Windows, Linux[Ubuntu 32Bit와 64Bit, Fedora 32Bit와 64Bit 기본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Apple Macintosh OS/x[일명 : 맥])와 멀티 브라우저(Microsoft Edge, Microsoft IE를 비롯 Mozilla Firefox, Google Chrome, Opera, Apple Safari)에 호환되도록 확보하는 동시에 상기 내용처럼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국가 정보화 기본법에 법령으로 입법 후 이 법령을 플러그인(클라이언트)프로그램 개발 제조업체에 하달 되도록 하시고 둘째 각 운영체제 각 웹브라우저에 호환되도록 홈페이지들을 의무적으로 개선하도록 법령으로 개정 입법화가 필요 합니다.

<표2> 국내 웹사이트 개선에관한 법령개정 요구 건의사항

항 목	구체적인 웹사이트 개선 후 적용 요구 사항
각 컴퓨터 운영체제 (O/S)별 홈페이지 개선 요구사항	MS Windows 용은 홈페이지는 현 상태로 유지 및 사안에 따라 개선 후 MS-Windows/리눅스/맥킨토시용 Non-ActiveX 방식 또는 HTML5방식으로 추가 개발 후 웹브라우저 [파이어폭스,오페라 구글크롬,사파리, 엣지, IE] 를 가리지 말고 모두 호환 되도록 개발 후 상용 의무화 하도록 법령 개정과 동시에 입법화 후
	Fedora Linux 32Bit용과 64Bit용 홈페이지 추가 개설 및 수정 후 리눅스용 Non-ActiveX 방식 또는 HTML5방식으로 추가 개발 후 (Fedora Linux를 비롯한 모든 레드햇 redhat 리눅스 계열) 웹브라우저 [파이어폭스,오페라 구글크롬] 를 가리지 말고 모두 호환되도록 개발 후 상용 의무화 하도록 법령 개정과 동시에 입법화 다음
	Ubuntu Linux 32bit용과 64Bit용 홈페이지 추가 개설 및 수정 후 리눅스용 Non-ActiveX 방식 또는 HTML5방식으로 추가 개발 후 (Ubuntu Linux를 비롯한 모든 데비안 Debian 리눅스 계열) 웹브라우저 [파이어폭스,오페라 구글크롬] 를 가리지 말고 모두 호환되도록 개발 후 상용 의무화 하도록 법령 개정과 동시에 입법화 하시고
	맥킨토시(Macintosh) [일명 : 맥]용 홈페이지 추가 개설 및 수정 후 맥킨토시용 Non-ActiveX 방식 또는 HTML5방식으로 추가 개발 후 웹브라우저 [파이어폭스,오페라 구글크롬,사파리] 를 가리지 말고 모두 호환되도록 개발 후 상용 의무화 하도록 법령 개정과 동시에 입법화 하셔야 합니다.
그 외의 방법	시중은행 오픈뱅킹 (인터넷 뱅킹) 사이트와 같이 접속 클라이언트 컴퓨터 사양(O/S의 종류와 접속한 웹브라우저의 의 종류) 를 자동 체크하고 오픈뱅킹으로 접속되는 방식 도 권장사항.

상기 내용대로 이행과 동시에 모든 웹사이트들은 멀티 O/S(Microsoft Windows, Linux[Ubuntu 32Bit와 64Bit, Fedora 32Bit와 64Bit 기본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Apple Macintosh OS/x[일명 : 맥]), 멀티 브라우저(엣지, 크롬, 오페라,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에 호환되는 Non-ActiveX 방식과 HTML5방식에 충족되도록 권장 사항이 아닌 기본 필수 의무 사항이 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가 정보화 기본법에 모든 웹사이트들을 멀티운영체제 (윈도우를 비롯 모든 리눅스,(우분투,페도라 기본지원) 맥킨토시 와 멀티브라우저(엣지, IE, 크롬, 오페라, 파이어폭스, 사파리)에 호환되도록 Non-ActiveX 방식과 HTML5방식으로 기본 의무적으로 개발 배포 하도록 국가 정보화 기본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입법 화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당 의무화 법령을 개정 입법 하시고 해당 법령을 홈페이지 제작 관리 용역업체에 이 법령을 하달 배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모든 홈페이지들 경우는 이미 있는 기존 홈페이지들은 는 점차 수정하도록 하고 새로 개발 할 홈페이지들은 국가 정보화 기본법에 모든 웹사이트들을 멀티운영체제 (윈도우를 비롯 모든 리눅스,(우분투,페도라 기본지원) 맥킨 토시 와 멀티브라우저(엣지, IE, 크롬, 오페라, 파이어폭스, 사파리)에 호환되도록 Non-ActiveX 방식과 HTML5방식으로 기본 의무적으로 개발 배포 하도록 국가 정보화 기본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입법화 하시고 해당 법령을 홈페이지 제작 관리 용역 업체에 이 법령을 하달 배포하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법령을 개정입법 후 공포 하셔야 합니다.(개정 됐는지 아직 개정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 1)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는 멀티O/S(Microsoft Windows, Linux[Ubuntu 32Bit와 64Bit, Fedora 32Bit와 64Bit 기본적으로 지원 되어야 함], Apple Macintosh OS/x[일명 : 맥])에 지원되어야 한다.
- 2)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는 멀티 브라우저 (Microsoft Edge, Microsoft IE를 비롯 Mozilla Firefox, Google Chrome, Opera, Apple Safari) 에 지원되어야 한다.
- 3)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는 플러그인 설치가 필요 없는 HTML5를 지원되어야 한다.(기존 ActiveX방식은 점진적으로 수정해 야 한다.)

상기 내용<표2>에는 웹사이트들은 Non-ActiveX 방식과 HTML5방식에 충족하도록 멀티운영체제(Microsoft Windows, Linux[Ubuntu 32Bit와 64Bit, Fedora 32Bit와 64Bit 기본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Apple Macintosh OS/x[일명 : 맥])와 멀티 브라우저(Microsoft Edge, Microsoft IE를 비롯 Mozilla Firefox, Google Chrome, Opera, Apple Safari)에 호환되도록 확보하면서 테스트 하시면서 추가 수정하시는 동시에 상기 내용처럼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국가 정보화 기본법에 법령으로 입법 하시고 그 법령을 홈페이지 제작 관리 용역업체에 하달 하시면 수월합니다.

2) 국산 기본적인 응용프로그램들은 다중운영체제(Multi O/S)호환되도록 호환성 의무화에 관한 법 규정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표3>과 같이 국내회사에서 개발 생산되는 기본 상용 응용프로그램들 제작 시판 할 경우 다중운영체제(Multi O/S) 호환성에 충족 준수하도록 법령 개정 후 입법화 하셔야 합니다.

<표3> 다중운영체제(Multi O/S) 적용 되어야 할 대상인 국내산 기본적인 응용 소프트웨어 목록 입니다.

용도별	제조회사	적용대상 제품 및 모델명	종류
사무용(문서작성).	한글과 컴퓨터社 (http://www.hancom.com)	한컴 오피스 전 제품.	문서작성.
사진 편집용.		한컴 이지포토(EZPhoto)	사진편집 프로그램.
사무용(문서작성) .	(주)폴라리스 오피스社 (http://www.polarisoffice.com)	폴라리스오피스 전 제품. (Polaris Office)	사무용(문서작성).
2D 3D 설계 제도용 (엔지니어링).	(주)인텔리 코리아社 (http://www.cadian.com)	캐디안 (Cadian)전 제품. (뷰어 및 3DCAD, 3DPrinting 등 모든 솔루션.)	2D 3D 설계 제도용 (엔지니어링)프로그램.
가상 드라이브(CD) 프로그램.	소프팅스(주) (http://www.cdspace.com)	시디스페이스(CD SPACE).	가상 CD롬 프로그램.
압축프로그램.	이스트 소프트社 (http://www.estsoft.co.kr) 를 비롯한 여러 압축프로그램 제조회사	알집을 비롯한 압축프로그램.	압축 유틸리티.
백신/보안. (안티바이러스/안티스파이웨어)	안랩(http://www.ahnlab.com)	V3 데스크톱 전 제품.	백신/보안 프로그램. (안티바이러스/안티스 파이웨어)
	하우리(http://www.hauri.co.kr)	바이로봇 데스크톱 전 제품.	
	잉카인터넷社 (http://www.inca.co.kr) (http://www.nprotect.com)	nProtect 데스크톱 전 제품.	
	이스트 소프트社 (http://www.estsoft.co.kr)	알약 제품.	

상기 국내산 기본적인 응용 프로그램들을 아래 내용대로 의무적으로 개선하도록 법령 개정 입법화가 필요합니다.

MS Windows 용으로 개발 후 상용 의무화 하도록 법령 개정과 동시에 입법화 후

Fedora Linux 32Bit용과 64Bit용 *.rpm 설치패키지 형태로 개발 시판 후 의무 상용화 하도록 법령 개정과 동시에 입법화 다음 (Fedora Linux를 비롯한 모든 레드햇[Redhat] 리눅스 계열)

Ubuntu Linux 32bit용과 64Bit용 *.deb 설치패키지 형태로 개발 시판 후 의무 상용화 하도록 법령 개정과 동시에 입법 하시고 (Ubuntu Linux를 비롯한 모든 데비안[Debian] 리눅스 계열)

매킨토시(Macintosh) [일명 : 맥]을 비롯한 애플社(Apple) 전 제품용 설치패키지 형태로 개발 시판 후 의무 상용화 하도록 법령 개정과 동시에 입법화 하셔야 합니다.

상기 내용대로 국내산 응용 프로그램들은 멀티 O/S(Microsoft Windows, Linux[Ubuntu 32Bit와 64Bit, Fedora 32Bit와 64Bit 기본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Apple Macintosh OS/x[일명 : 맥]), 호환되도록 권장 사항이 아닌 기본 필수 의무 사항이 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가 정보화 기본법에 MS Windows 용을 비롯, Fedora Linux 32Bit용과 64Bit용 .rpm (Fedora Linux를 비롯한 모든 레드햇 redhat 리눅스 계열) 설치패키지 형태와 Ubuntu Linux 32bit용과 64Bit용 .deb 설치패키지(Ubuntu Linux를 비롯한 모든 데비안 Debian 리눅스 계열) 형태, 매킨토시(Macintosh) [일명 : 맥]용 설치패키지 형태로 국내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제조업체에 기본 의무적으로 개발 배포 하도록 국가 정보화 기본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법령에 입법 후 이 법령을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업체에 하달 되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법령을 개정 입법 후 공포 하셔야 합니다.(개정 되었는지 아직 개정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국산 응용프로그램들은 멀티 O/S(Microsoft Windows, Linux[Ubuntu 32Bit와 64Bit, Fedora 32Bit와 64Bit 기본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Apple Macintosh OS/x[일명 : 맥]) 지원되어야 한다.

3) 다음 국산 온라인 업무용 프로그램들은 다중운영체제(Multi O/S)호환되도록 호환성 의무화에 관한 법 규정이 필요합니다. 1 아래 내용<표4>과 같이 국내회사에서 개발 생산되는 온라인 업무용 응용프로그램을 제작 시판 할 때 다중운영체제 (Multi O/S) 호환성에 충족 준수하도록 법령 개정 후 입법화 하셔야 합니다.

<표4>다중운영체제(Multi O/S) 적용 되어야 할 대상인 국내산 온라인 업무용 응용 소프트웨어(웹 플러그인 포함) 목록입니다.

용도별	제조회사	적용대상 제품 및 모델명	종류
기업 경영관리 솔루션.	더존 비즈온社 (http://www.duzon.com)	더존 전 제품, 모든 서비스와 모든 서비스.	경영관리 솔루션.
증권/ 주식업무용 프로그램.	국내 전 증권사	홈 트레이딩(사이버트레이딩) 프로그램.	PC 설치형 및 HTML5.
전자문서관리 솔루션. [Non-ActiveX, HTML5 지원과 멀티O/S 필수지원 요망.]	인지소프트社 (Inzisoft) [http://www.inzisoft.com]	전자문서 관리프로그램을 비롯한 전 제품, 모든서비스와 모든 솔루션.	각종 웹 플러그인(클라이언트)프로그램.
전자문서 관리 솔루션. [Non-ActiveX, HTML5 지원과 멀티O/S 필수지원 요망.]	유니닥스社 (http://www.unidocs.co.kr)	전자문서(EZ PDF 시리즈 전 제품) 관리프로그램을 비롯한 전 제품, 모든서비스와 솔루션.	문서관리.
보이스아이 음성코드 생성과 바코드 인식 후 음성으로 재변환 프로그램. [For Server/Client 는 Non-ActiveX, HTML5 지원과 멀티O/S 필수지원 요망.]	(주)보이스아이社 (VOICEYE) [http://www.voiceye.com]	VOICEYE Maker(S/W) 비롯한 전 제품, 전 솔루션, 전 서비스. ※Open Office Writer와 Libre Office Writer 필수 지원 요망. (이유: 윈도우즈 를 비롯 리눅스 매킨토시에는 Open Office와 Libre Office가 기본적으로 공통 지원되며 PDF 내보내기가 기본적으로 지원됨.)	문서관리.

상기 국내산 온라인 업무용 응용 소프트웨어(웹플러그인 포함) 들을 의무적으로 개선하도록 법령 개정 입법화가 필요합니다.

MS Windows 용으로 개발 후 상용 의무화 하도록 법령으로 개정 과 동시에 입법화 후
Fedora Linux 32Bit용과 64Bit용 *.rpm 설치패키지 형태로 개발 시판 후 의무 상용화하도록 법령 개정과 동시에 입법화 하신 다음 (Fedora Linux를 비롯한 모든 레드햇[Redhat] 리눅스 계열)
Ubuntu Linux 32bit용과 64Bit용 *.deb 설치패키지 형태로 개발 시판 후 의무 상용화 하도록 법령 개정과 동시에 입법화 하시고 (Ubuntu Linux를 비롯한 모든 데비안[Debian] 리눅스 계열)
매킨토시(Macintosh) [일명 : 맥]을 비롯한 애플社(Apple) 전 제품용 설치패키지 형태로 개발 시판 후 의무 상용화 하도록 법령 개정과 동시에 입법화 하셔야 합니다.

상기 내용대로 국내산 응용 프로그램들은 멀티 O/S(Microsoft Windows, Linux[Ubuntu 32Bit와 64Bit, Fedora 32Bit와 64Bit 기본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Apple Macintosh OS/x[일명 : 맥]), 호환되도록 권장 사항이 아닌 기본 필수 의무 사항이 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가 정보화 기본법에 MS Windows 용을 비롯, Fedora Linux 32Bit용과 64Bit용 .rpm (Fedora Linux를 비롯한 모든 레드햇 redhat 리눅스 계열) 설치패키지 형태와 Ubuntu Linux 32bit용과 64Bit용 .deb 설치패키지(Ubuntu Linux를 비롯한 모든 데비안 Debian 리눅스 계열) 형태, 매킨토시(Macintosh) [일명 : 맥]용 설치패키지 형태로 국내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제조업체에 기본 의무적으로 개발 배포 하도록 국가 정보화 기본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법령으로 입법 후 이 법령을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업체에 하달 되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법령을 개정 입법 후 공포 하셔야 합니다.(개정 되었는지 아직 개정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1)모든 국산 응용프로그램들은 멀티 O/S(Microsoft Windows, Linux[Ubuntu 32Bit와 64Bit, Fedora 32Bit와 64Bit 기본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Apple Macintosh OS/x[일명 : 맥]) 지원되어야 한다.

4) 다음 국산 온라인 업무용 프로그램들은 다중운영체제(Multi O/S)호환되도록 호환성 의무화에 관한 법 규정이 필요 합니다. 2

아래 내용<표5>과 같이 국내회사에서 개발 생산되는 온라인 업무용 응용프로그램을 제작 시판 할 때 다중운영체제 (Multi O/S) 호환성에 충족 준수하도록 법령 개정 후 입법화 하셔야 합니다.

<표5>다중운영체제(Multi O/S) 적용 되어야 할 대상인 국내산 온라인 업무용 응용 소프트웨어(웹 플러그인 포함) 목록 입니다.

용도별	제조회사	적용대상 제품 및 모델명	종류
전자문서 관리 솔루션. [OZ Report는 Non-ActiveX, HTML5 지원과 멀티O/S 필수지원 요망.]	(주)포시에스社 (FORCS) [http://www.forcs.com]	OZ 모든 제품과 모든 솔루션과 모든서비스.	전자문서 관리 솔루션.
정보보안및 각종 보안솔루션. [웹 플러그인(클라이언트) 제품은 Non-ActiveX, HTML5 지원과 멀티 O/S 필수지원 요망.]	마크애니社(Mark Any) [http://www.markany.com]	마크애니(Mark Any) 전산 보안제품과 모든 보안 제품, 모든 솔루션, 모든 서비스.	정보보안 외 모든 보안솔루션.
전자문서 관리 솔루션. [웹 플러그인(클라이언트) 제품은 [Non-ActiveX, HTML5 지원과 멀티 O/S 필수지원 요망.]	(주)클리프소프트社(ClipSoft) [http://clipsoft.co.kr]	(주)클리프소프트 모든 제품과 모든 솔루션과 모든서비스. ※CLIP report 제품은 Open Office 오피스 패키지와 Libre Office 오피스 패키지를 필수 지원 요망. (이유: 윈도우즈 를 비롯 리눅스 매킨토시에는 Open Office와 Libre Office가 기본적으로 공통 지원되며 PDF 내보내기가 기본적으로 지원 됨.)	전자문서 관리 솔루션.

상기 국내산 온라인 업무용 응용 소프트웨어(웹플러그인 포함) 들을 의무적으로 개선하도록 법령 개정 입법화가 필요합니다.

MS Windows 용으로 개발 후 상용 의무화 하도록 법령으로 개정 과 동시에 입법화 후

Fedora Linux 32Bit용과 64Bit용 *.rpm 설치패키지 형태로 개발 시판 후 의무 상용화하도록 법령 개정과 동시에 입법화 하신 다음 (Fedora Linux를 비롯한 모든 레드햇[Redhat] 리눅스 계열)

Ubuntu Linux 32bit용과 64Bit용 *.deb 설치패키지 형태로 개발 시판 후 의무 상용화 하도록 법령 개정과 동시에 입법화 하시고 (Ubuntu Linux를 비롯한 모든 데비안[Debian] 리눅스 계열)

매킨토시(Macintosh) [일명 : 맥]을 비롯한 애플社(Apple) 전 제품용 설치패키지 형태로 개발 시판 후 의무 상용화 하도록 법령 개정과 동시에 입법화 하셔야 합니다.

상기 내용대로 국내산 응용 프로그램들은 멀티 O/S(Microsoft Windows, Linux[Ubuntu 32Bit와 64Bit, Fedora 32Bit와 64Bit 기본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Apple Macintosh OS/x[일명 : 맥]), 호환되도록 권장 사항이 아닌 기본 필수 의무 사항이 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가 정보화 기본법에 MS Windows 용을 비롯, Fedora Linux 32Bit용과 64Bit용 .rpm (Fedora Linux를 비롯한 모든 레드햇 redhat 리눅스 계열) 설치패키지 형태와 Ubuntu Linux 32bit용과 64Bit용 .deb 설치패키지(Ubuntu Linux를 비롯한 모든 데비안 Debian 리눅스 계열) 형태, 매킨토시(Macintosh) [일명 : 맥]용 설치패키지 형태로 국내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제조업체에 기본 의무적으로 개발 배포 하도록 국가 정보화 기본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법령으로 입법 후 이 법령을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업체에 하달 되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법령을 개정 입법 후 공포 하셔야 합니다.(개정 되었는지 아직 개정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1)모든 국산 응용프로그램들은 멀티 O/S(Microsoft Windows, Linux[Ubuntu 32Bit와 64Bit, Fedora 32Bit와 64Bit 기본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Apple Macintosh OS/x[일명 : 맥]) 지원되어야 한다.

5) 다음 국산 온라인 업무용 프로그램들은 다중운영체제(Multi O/S)호환되도록 호환성 의무화에 관한 법 규정이 필요합니다. 3 아래 내용<표6>과 같이 국내회사에서 개발 생산되는 온라인 업무용 응용프로그램을 제작 시판 할 때 다중운영체제 (Multi O/S) 호환성에 충족 준수하도록 법령 개정 후 입법화 하셔야 합니다.

<표6>다중운영체제(Multi O/S) 적용 되어야 할 대상인 국내산 온라인 업무용 응용 소프트웨어(웹 플러그인 포함) 목록 입니다.

용도별	제조회사	적용대상 제품 및 모델명	종류
정보보안 및 각종 보안솔루션. [웹 플러그인(클라이언트) 제품은 Non-ActiveX, HTML5 지원과 멀티 O/S 필수지원 요망.]	파수닷컴社(Fasoo) [http://www.fasoo.com]	DRM 솔루션(소프트웨어) 제품을 비롯, 파수닷컴社의 모든 소프트웨어제품과 모든 솔루션, 그리고 모든 서비스.	정보보안 솔루션.
리포팅 솔루션 외 기타 정보처리관련 솔루션 [웹 플러그인(클라이언트) 제품은 [Non-ActiveX, HTML5 지원과 멀티 O/S 필수지원 요망.]	(주)엠투 소프트社 [http://www.m2soft.co.kr]	Crownix 모든 소프트웨어 제품과 서비스와 솔루션 그리고 X-Finger Crownix 모든 소프트웨어 제품과 서비스와 솔루션.	리포팅 솔루션.
사무용 프로그램을 비롯한 리포팅 솔루션 외 기타 정보처리관련 솔루션. [ML Reprt 웹 플러그인(클라이언트) 제품은 Non-ActiveX, HTML5 지원과 멀티O/S 필수지원 요망.]	인프라웨어社 [http://www.infraware-global.com]	폴라리스오피스, 폴라리스 전 제품과 리포팅 솔루션 (Web Rporting Solution) 인 ML Report 전 제품, Refernce 전제품 과 서비스와 솔루션을 비롯, 인프라웨어와 그 계열사의 모든 소프트웨어 제품 과 서비스와 솔루션.	사무용 프로그램을 비롯한 리포팅 솔루션 외 기타 정보처리관련 솔루션.

상기 국내산 온라인 업무용 응용 소프트웨어(웹플러그인 포함) 들을 의무적으로 개선하도록 법령 개정 입법화가 필요합니다.

MS Windows 용으로 개발 후 상용 의무화 하도록 법령으로 개정 과 동시에 입법화 후

Fedora Linux 32Bit용과 64Bit용 *.rpm 설치패키지 형태로 개발 시판 후 의무 상용화하도록 법령 개정과 동시에 입법화 하신 다음 (Fedora Linux를 비롯한 모든 레드햇[Redhat] 리눅스 계열)

Ubuntu Linux 32bit용과 64Bit용 *.deb 설치패키지 형태로 개발 시판 후 의무 상용화 하도록 법령 개정과 동시에 입법화 하시고 (Ubuntu Linux를 비롯한 모든 데비안[Debian] 리눅스 계열)

매킨토시(Macintosh) [일명 : 맥]을 비롯한 애플社(Apple) 전 제품용 설치패키지 형태로 개발 시판 후 의무 상용화 하도록 법령 개정과 동시에 입법화 하셔야 합니다.

상기 내용대로 국내산 응용 프로그램들은 멀티 O/S(Microsoft Windows, Linux[Ubuntu 32Bit와 64Bit, Fedora 32Bit와 64Bit 기본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Apple Macintosh OS/x[일명 : 맥]), 호환되도록 권장 사항이 아닌 기본 필수 의무 사항이 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가 정보화 기본법에 MS Windows 용을 비롯, Fedora Linux 32Bit용과 64Bit용 .rpm (Fedora Linux를 비롯한 모든 레드햇 redhat 리눅스 계열) 설치패키지 형태와 Ubuntu Linux 32bit용과 64Bit용 .deb 설치패키지(Ubuntu Linux를 비롯한 모든 데비안 Debian 리눅스 계열) 형태, 매킨토시(Macintosh) [일명 : 맥]용 설치패키지 형태로 국내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제조업체에 기본 의무적으로 개발 배포 하도록 국가 정보화 기본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법령으로 입법 후 이 법령을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업체에 하달 되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법령을 개정 입법 후 공포 하셔야 합니다.(개정 되었는지 아직 개정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1)모든 국산 응용프로그램들은 멀티 O/S(Microsoft Windows, Linux[Ubuntu 32Bit와 64Bit, Fedora 32Bit와 64Bit 기본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Apple Macintosh OS/x[일명 : 맥]) 지원되어야 한다.

6) 다음 국산 전자사무기기, 휴대통신기기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와 운영/관리 소프트웨어들은 다중운영체제(Multi O/S)호환되도록 호환성 의무화에 관한 법규정이 필요 합니다.

아래 내용<표7>과 같이 국내회사에서 개발 생산되는 전자사무기기와 이동통신기기 제품등을 제작 시판 할 때 다중운영체제(Multi O/S) 호환성에 충족 준수하도록 법령 개정 후 입법화 하셔야 합니다.

<표7>다중운영체제(Multi O/S) 적용 되어야 할 대상인 국내산 이동통신기기제품, 전자사무기기제품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목록 입니다.

용도별	제조회사	적용대상 제품 및 모델명	비고
전자사무기기	삼성전자사 (http://www.samsung.com/sec) LG전자사[前 금성사] (http://www.lge.co.kr)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Fax 복합기를 비롯한 모든 전자사무기기.	삼성전자사 레이저젯 방식 (컬러/흑백)전자사무기기 제품들은 MS Windows를 비롯한 리눅스, 매킨토시 등 모든 운영체제를 지원하지만 잉크젯방식의 전자사무기기 제품의 경우는 MS Windows용에만 지원됩니다.
이동통신기기	삼성전자사 (http://www.samsung.com/sec) LG전자사[前 금성사] (https://www.lge.co.kr)	휴대폰, 스마트폰 등.	국내산 스마트폰의 경우 리눅스에서 이동식 디스크 지원과 전원충전은 되지만 여러 범용기능은 MS-Windows에만 지원됩니다.

상기 국내산 컴퓨터 주변기기를 제품을 비롯 모든 디지털기기같은 하드웨어 기기제품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와 운영/관리 소프트웨어 들을 의무적으로 개선하도록 법령 개정 입법화가 필요합니다.

MS Windows 용으로 개발 후 상용 의무화 하도록 법령으로 개정 과 동시에 입법화 후

Fedora Linux 32Bit용과 64Bit용 *.rpm 설치패키지 형태로 개발 시판 후 의무 상용화하도록 법령 개정과 동시에 입법화 하신 다음 (Fedora Linux를 비롯한 모든 레드햇[Redhat] 리눅스 계열)

Ubuntu Linux 32bit용과 64Bit용 *.deb 설치패키지 형태로 개발 시판 후 의무 상용화 하도록 법령 개정과 동시에 입법화 하시고 (Ubuntu Linux를 비롯한 모든 데비안[Debian] 리눅스 계열)

매킨토시(Macintosh) [일명 : 맥]을 비롯한 애플사(Apple) 전 제품용 설치패키지 형태로 개발 시판 후 의무 상용화 하도록 법령 개정과 동시에 입법화 하셔야 합니다.

상기 내용대로 국내산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를 제품을 비롯 모든 디지털기기같은 하드웨어 기기제품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와 운영/관리 소프트웨어들은 멀티 O/S(Microsoft Windows, Linux[Ubuntu 32Bit와 64Bit, Fedora 32Bit와 64Bit 기본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Apple Macintosh OS/x[일명 : 맥]), 호환되도록 권장 사항이 아닌 기본 필수업무 사항이 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가 정보화 기본법에 MS Windows 용을 비롯, Fedora Linux 32Bit용과 64Bit용 .rpm (Fedora Linux를 비롯한 모든 레드햇 redhat 리눅스 계열) 설치패키지 형태와 Ubuntu Linux 32bit용과 64Bit용 .deb 설치패키지(Ubuntu Linux를 비롯한 모든 데비안 Debian 리눅스 계열) 형태, 매킨토시(Macintosh) [일명 : 맥]용 설치패키지 형태로 국내산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를 비롯한 디지털기기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 제조 판매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와 운영/관리 소프트웨어를 기본 의무적으로 개발 배포와 설치 및 제거방법, 그리고 재설치방법을 배포 하도록 국가 정보화 기본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법령으로 입법 후 이 법령을 국내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와 디지털기기같은 하드웨어 개발 제조업체에 하달 되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법령을 개정 입법 후 공포 하셔야 합니다.(개정 되었는지 아직 개정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1)모든 국산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 제품을 비롯 모든 디지털기기같은 하드웨어 기기제품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와 해당 기기 관리/운영 소프트웨어들은 멀티 O/S(Microsoft Windows, Linux[Ubuntu 32Bit와 64Bit, Fedora 32Bit와 64Bit 기본 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Apple Macintosh OS/x[일명 : 맥]) 지원되어야 하고 해당제품 제조 판매시 각 운영체제(O/S) 별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와 운영/관리 소프트웨어와 설치 및 제거방법, 그리고 재설치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드라이버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에서 드라이버 프로그램과 관리 운영 프로그램 들이 알아서 스스로 설치되거나 설치없이 MS Windows를 비롯 리눅스, 매킨토시에서 바로 인식 작동되는 제품을 그러하지 아니한다.[USB타입 착탈식 보조기억 장치 등.]

(단 아이 폰[애플스마트폰], 아이패드[애플 태블릿]와 컴퓨터의 경우에는 매킨토시 데스크톱이나 매킨토시 노트북제품을 비롯한 모든 Apple 사 제품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Apple사는 국내제조회사가 아님])

7) 다음 국산 컴퓨터기기 다중운영체제(Multi O/S)호환되도록 호환성 의무화에 관한 법규 정이 필요 합니다.

아래 내용<표8>과 같이 국내회사에서 개발 생산되는 컴퓨터 제품을 제작 시판 할 때 다중운영체제(Multi O/S) 호환성 에 충족 준수하도록 법령 개정 후 입법화 하셔야 합니다.

<표8>다중운영체제(Linux O/S) 적용 되어야 할 대상인 국내산 컴퓨터제품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목록 입니다.

용도별	제조회사	적용대상 제품 및 모델명	비고
데스크톱용	삼성전자사 (http://www.samsung.com/sec) LG전자사[前 금성사](http://www.lge.co.kr) TG삼보컴퓨터사 (http://www.trigem.co.kr) 주현테크사(http://www.jooyon.co.kr) 대우루컴즈사[前 대우전자사] (http://www.lucoms.co.kr) 메이커 회사 외 기타 국내 모든 컴퓨터 제조업체.	데스크톱, 워크스테이션, 올인원 PC(일체형 PC) 전 제품.	데스크톱 기본형 제품의 경우 메인보드, 그래픽 카드 내부 보조기억장치 와(HDD,ODD,FDD SD 카드Deck [SDCard Reader])등은 해당 부품 의 칩셋 제조회사에서 최신 리눅스를 기본적으로 로 지원 됩니다.
이동형(Mobile)	삼성전자사 (http://www.samsung.com/sec) LG전자사[前 금성사](http://www.lge.co.kr) TG삼보컴퓨터사 (http://www.trigem.co.kr) 주현테크사(http://www.jooyon.co.kr) 대우루컴즈[社 대우전자사] (http://www.lucoms.co.kr)	노트북과 태블릿PC 슬레이트 PC를 비롯한 휴대용 컴퓨터 전 제품.	핵심 기본부품은 최신버 전의 리눅스에서 지원 되지만 평션키(부가/편 의기능 제어판)경우 리 눅스에서 지원 되는 경 우도 있고 MS-Window에만 지원 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상기 국내산 컴퓨터 주변기기를 제품을 비롯 모든 디지털기기같은 하드웨어 기기제품 드라이버와 운영/관리소프트웨어 들을 의무적으로 개
선하도록 법령 개정 입법화가 필요합니다.

MS Windows 용으로 개발 후 상용 의무화 하도록 법령으로 개정 과 동시에 입법화 후

Fedora Linux 32Bit용과 64Bit용 *.rpm 설치패키지 형태로 개발 시판 후 의무 상용화하도록 법령 개정과 동시에 입법화 하신 다
음 (Fedora Linux를 비롯한 모든 레드햇[Redhat] 리눅스 계열)

Ubuntu Linux 32bit용과 64Bit용 *.deb 설치패키지 형태로 개발 시판 후 의무 상용화 하도록 법령 개정과 동시에 입법화 하시고
(Ubuntu Linux를 비롯한 모든 데비안[Debian] 리눅스 계열)

상기 내용대로 국내산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를 제품을 비롯 모든 디지털기기같은 하드웨어 기기제품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와 운영/관리 소
프트웨어들은 멀티 O/S(Microsoft Windows, Linux[Ubuntu 32Bit와 64Bit, Fedora 32Bit와 64Bit 기본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Appe
Macintosh OS/x[일명 : 맥]), 호환되도록 권장 사항이 아닌 기본 필수업무 사항이 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가 정보화 기본법에 MS Windows 용을 비롯, Fedora Linux 32Bit용과 64Bit용 .rpm (Fedora Linux를 비롯한 모든 레드햇 redhat 리눅
스 계열) 설치패키지 형태와 Ubuntu Linux 32bit용과 64Bit용 .deb 설치패키지(Ubuntu Linux를 비롯한 모든 데비안 Debian 리눅스 계
열) 형태, 매킨토시(Macintosh) [일명 : 맥]용 설치패키지 형태로 국내산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를 비롯한 디지털기기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 제조 판매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와 운영/관리 소프트웨어를 기본 의무적으로 개발 배포와 설치 및 제거방법, 그리고 재설치방법을 배
포 하도록 국가 정보화 기본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법령으로 입법 후 이 법령을 국내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와 디지털기기같은 하드웨
어 개발 제조업체에 하달 되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법령을 개정 입법 후 공포 하셔야 합니다.(개정 되었는지 아직 개정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1)모든 국산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 제품을 비롯 모든 디지털기기같은 하드웨어 기기제품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와 해당 기기 운영/관리프로
그램 들은 멀티 O/S(Microsoft Windows, Linux[Ubuntu 32Bit와 64Bit, Fedora 32Bit와 64Bit 기본 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Apple
Macintosh OS/x[일명 : 맥]) 지원되어야 하고 해당제품 제조 판매시 각 운영체제(O/S) 별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와 운영/관리 소프트웨어와
설치 및 제거방법, 그리고 재설치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드라이버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에서 드라이버 프로그램과 관리 운영 프로그램 들이 알아서 스스로 설치되거나 설치없이 MS Windows를
비롯 리눅스, 매킨토시에서 바로 인식 작동되는 제품을 그러하지 아니한다.[USB타입 착탈식 보조기억 장치 등])

(단 아이 폰[애플스마트폰], 아이패드[애플 태블릿]와 컴퓨터의 경우에는 매킨토시 데스크톱이나 매킨토시 노트북제품을 비롯한 모든 Apple
사 제품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Apple사는 국내제조회사가 아님])

8) 다음 국산 컴퓨터기반 멀티미디어(엔터테인먼트) 주변기기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와 운영/관리 소프트웨어들은 다중운영체제 (Multi O/S)호환되도록 호환성 의무화에 관한 법규정이 필요 합니다.

아래 내용<표9>과 같이 국내회사에서 개발 생산되는 컴퓨터기반 멀티미디어 제품을 제작 시판 할 때 다중운영체제 (Multi O/S) 호환성에 충족 준수하도록 법령 개정 후 입법화 하셔야 합니다.

<표9>다중운영체제(Multi O/S) 적용 되어야 할 대상인 국내산 컴퓨터기반 멀티미디어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목록 입니다.

용도별	제조회사	적용대상 제품 및 모델명
컴퓨터 기반 영상/음향 기기	스카이 디지털사 (http://skyok.co.kr)	내장형 외장형 TV수신카드를 비롯한 비디오캡처 (녹화)기기, 오디오카드 (사운드카드)를 비롯한 컴퓨터기반 모든 멀티미디어 기기 전 제품.
화상 캠	삼성전자사 (http://www.samsung.com/sec) 세빛 마이크로사(http://www.savitmicro.co.kr) 로지텍사 (http://www.logitech.com)	웹 카메라 등. ※일부 오래된 화상 캠 제품의 경우 리눅스에서 지원되는 제품도 왕왕 있습니다.(Ubuntu 14.04 기준)

상기 국내산 컴퓨터 주변기기를 제품을 비롯 모든 디지털기기같은 하드웨어 기기제품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와 운영/관리 소프트웨어들을 의무적으로 개선하도록 법령 개정 입법화가 필요합니다.

MS Windows 용으로 개발 후 상용 의무화 하도록 법령으로 개정 과 동시에 입법화 후

Fedora Linux 32Bit용과 64Bit용 **.rpm 설치패키지 형태로 개발 시판 후 의무 상용화하도록 법령 개정과 동시에 입법화 하신 다음 (Fedora Linux를 비롯한 모든 레드햇[Redhat] 리눅스 계열)

Ubuntu Linux 32bit용과 64Bit용 **.deb 설치패키지 형태로 개발 시판 후 의무 상용화 하도록 법령 개정과 동시에 입법화 하시고 (Ubuntu Linux를 비롯한 모든 데비안[Debian] 리눅스 계열)

매킨토시(Macintosh) [일명 : 맥]을 비롯한 애플사(Apple) 전 제품용 설치패키지 형태로 개발 시판 후 의무 상용화 하도록 법령 개정과 동시에 입법화 하셔야 합니다.

상기 내용대로 국내산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를 제품을 비롯 모든 디지털기기같은 하드웨어 기기제품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와 운영/관리소프트웨어들은 멀티 O/S(Microsoft Windows, Linux[Ubuntu 32Bit와 64Bit, Fedora 32Bit와 64Bit 기본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Apple Macintosh OS/x[일명 : 맥]), 호환되도록 권장 사항이 아닌 기본 필수 의무 사항이 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가 정보화 기본법에 MS Windows 용을 비롯, Fedora Linux 32Bit용과 64Bit용 .rpm (Fedora Linux를 비롯한 모든 레드햇 redhat 리눅스 계열) 설치패키지 형태와 Ubuntu Linux 32bit용과 64Bit용 .deb 설치패키지(Ubuntu Linux를 비롯한 모든 데비안 Debian 리눅스 계열) 형태, 매킨토시(Macintosh) [일명 : 맥]용 설치패키지 형태로 국내산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를 비롯한 디지털기기 제조업체에 해당제품 제조 판매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와 운영/관리 소프트웨어를 기본 의무적으로 개발 배포와 설치 및 제거방법, 그리고 재설치방법을 배포 하도록 국가 정보화 기본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법령으로 입법 후 이 법령을 국내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와 디지털기기같은 하드웨어 개발 제조업체에 하달 되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법령을 개정 입법 후 공포 하셔야 합니다.(개정 되었는지 아직 개정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1)모든 국산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 제품을 비롯 모든 디지털기기같은 하드웨어 기기제품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와 해당 기기 운영/관리소프트웨어 들은 멀티 O/S(Microsoft Windows, Linux[Ubuntu 32Bit와 64Bit, Fedora 32Bit와 64Bit 기본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Apple Macintosh OS/x[일명 : 맥]) 지원되어야 하고 해당제품 제조 판매시 각 운영체제(O/S) 별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와 운영/관리 소프트웨어와 설치 및 제거방법, 그리고 재설치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드라이버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에서 드라이버 프로그램과 관리 운영 프로그램 들이 알아서 스스로 설치되거나 설치없이 MS Windows를 비롯 리눅스, 매킨토시에서 바로 인식 작동되는 제품을 그러하지 아니한다.[USB타입 착탈식 보조기억 장치 등.]

(단 아이 폰[애플스마트폰], 아이패드[애플 태블릿]와 컴퓨터의 경우에는 매킨토시 데스크톱이나 매킨토시 노트북제품을 비롯한 모든 Apple사 제품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Apple사는 국내제조회사가 아님])

9) 다음 국산 컴퓨터용 초고속 무선 인터넷 모뎀기기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와 운영/관리 소프트웨어들은 다중운영체제(Multi O/S)호환되도록 호환성 의무화에 관한 법규정이 필요 합니다.

아래 내용<표10>과 같이 국내회사에서 개발 생산되는 컴퓨터용 초고속 무선 인터넷 모뎀(단말)제품을 제작 시판 할 때 다중운영체제(Multi O/S) 호환성에 충족 준수하도록 법령 개정 후 입법화 하셔야 합니다.

<표10>다중운영체제(Multi O/S) 적용 되어야 할 대상인 국내산 컴퓨터기반 멀티미디어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목록 입니다.

용도별	제조회사	적용대상 제품 및 모델명
통신모뎀[단말]기기 (와이브로, LTE, 3G, 4G 등 초고속 무선인터넷)	국내 전 모뎀(단말기)과 LAN카드 제조업체	와이브로, LTE, 3G, 4G 등 초고속 무선인터넷 통신을 지원하는 USB형태의 외장형과 및 확장카드(컴퓨터 메인보드에 있는 PCI/PClex 인터페이스 확장소켓에 꽂아서 사용하는 Add-On 방식 확장카드와 노트북컴퓨터에 꽂아서 사용하는 PCMCIA Add-On 방식 확장카드)형태의 컴퓨터 본체 내장형 초고속 무선인터넷 모뎀과 와이 파이 기반 무선랜카드 전 제품과 전 단말제품. (일부 와이파이 기반 무선랜카드의 경우 리눅스나 매킨토시에도 지원되는 제품도 있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사 (http://www.samsung.com/sec) LG전자사[前 금성사] (http://www.lge.co.kr)	와이브로, LTE, 3G, 4G 등 초고속 무선인터넷 통신을 지원하는 모든 스마트폰과 모든 휴대폰.

상기 국내산 컴퓨터 주변기기를 제품을 비롯 모든 디지털기기같은 하드웨어 기기제품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와 운영/관리 소프트웨어들을 의무적으로 개선하도록 법령 개정 입법화가 필요합니다.

MS Windows 용으로 개발 후 상용 의무화 하도록 법령으로 개정 과 동시에 입법화 후

Fedora Linux 32Bit용과 64Bit용 *.rpm 설치패키지 형태로 개발 시판 후 의무 상용화하도록 법령 개정과 동시에 입법화 하신 다음 (Fedora Linux를 비롯한 모든 레드햇[Redhat] 리눅스 계열)

Ubuntu Linux 32bit용과 64Bit용 *.deb 설치패키지 형태로 개발 시판 후 의무 상용화 하도록 법령 개정과 동시에 입법화 하시고 (Ubuntu Linux를 비롯한 모든 데비안[Debian] 리눅스 계열)

매킨토시(Macintosh) [일명 : 맥]을 비롯한 애플사(Apple) 전 제품용 설치패키지 형태로 개발 시판 후 의무 상용화 하도록 법령 개정과 동시에 입법화 하셔야 합니다.

상기 내용대로 국내산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를 제품을 비롯 모든 디지털기기같은 하드웨어 기기제품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와 운영/관리소프트웨어들은 멀티 O/S(Microsoft Windows, Linux[Ubuntu 32Bit와 64Bit, Fedora 32Bit와 64Bit 기본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Apple Macintosh OS/x[일명 : 맥]), 호환되도록 권장 사항이 아닌 기본 필수무의 사항이 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가 정보화 기본법에 MS Windows 용을 비롯, Fedora Linux 32Bit용과 64Bit용 .rpm (Fedora Linux를 비롯한 모든 레드햇 redhat 리눅스 계열) 설치패키지 형태와 Ubuntu Linux 32bit용과 64Bit용 .deb 설치패키지(Ubuntu Linux를 비롯한 모든 데비안 Debian 리눅스 계열) 형태, 매킨토시(Macintosh) [일명 : 맥]용 설치패키지 형태로 국내산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를 비롯한 디지털기기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 제조 판매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와 운영/관리 소프트웨어를 기본 의무적으로 개발 배포와 설치 및 제거방법, 그리고 재설치방법을 배포 하도록 국가 정보화 기본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법령으로 입법 후 이 법령을 국내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와 디지털기기같은 하드웨어 개발 제조업체에 하달 되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법령을 개정 입법 후 공포 하셔야 합니다.(개정 되었는지 아직 개정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1)모든 국산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 제품을 비롯 모든 디지털기기같은 하드웨어 기기제품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와 해당 기기 운영/관리소프트웨어 들은 멀티 O/S(Microsoft Windows, Linux[Ubuntu 32Bit와 64Bit, Fedora 32Bit와 64Bit 기본 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Apple Macintosh OS/x[일명 : 맥]) 지원되어야 하고 해당제품 제조 판매시 각 운영체제(O/S) 별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와 운영/관리 소프트웨어와 설치 및 제거방법, 그리고 재설치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드라이버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에서 드라이버 프로그램과 관리 운영 프로그램 들이 알아서 스스로 설치되거나 설치없이 MS Windows를 비롯 리눅스, 매킨토시에서 바로 인식 작동되는 제품을 그러하지 아니한다.[USB타입 착탈식 보조기억 장치 등.]

(단 아이 폰[애플스마트폰], 아이패드[애플 태블릿]와 컴퓨터의 경우에는 매킨토시 데스크톱이나 매킨토시 노트북제품을 비롯한 모든 Apple 사 제품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Apple사는 국내제조회사가 아님])

<※>리눅스에서 지원되는 실제 웹카메라(화상 캠) 제품입니다.

제조회사	제품 및 모델명
큐리오(Qrio) 社	2005년식 코브라캠[Cobra-Cam(M120)]
제품 외관	Test 촬영 사진 (Ubuntu 12.04 64Bit LTS Linux O/S설치된 컴퓨터에 연결 후 촬영)



Test 촬영 시험용 컴퓨터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품명	제조회사	제품 및 모델명
CPU	AMD社 [http://www.amd.com]	AMD Phenom™ II x4 Processor 955 3.2GHz
메모리	삼성전자社 [http://www.samsung.com/sec]	DDR3, 4GBT, FSB:10600, 양면 램 1개 사용중 이므로 현재 총 메모리가 4GB입니다.
메인보드	ASUS社[http://www.asus.com]	M5A97 (AMD 970+ SB950 Chiset 사용)
그래픽카드	Nvidia社[http://www.nvidia.co.kr]	Nvidia GT 630
오디오카드	메인보드 내장 오디오+ 그래픽카드 내장 오디오 병용 사용 중. [실제로는 HDMI를 통해서 모니터에서 오디오가 재생 됨]	
랜카드	메인보드 내장 랜 사용 중임.	
HDD	웨스턴 디지털社[http://www.wdc.com]	WD 500GB
ODD	LG전자社[http://www.lge.co.kr]	16x Blu-Ray/ DVD Writer Super Multi Blue BH16
O/S	캐노니컬社[http://www.canonical.com]	Ubuntu 14.04. 64Bit LTS Linux O/S
모니터	삼성전자社 [http://www.samsung.com/sec]	SyncMaster Magic T23A351 TV모니터

결론적으로 상기 내용처럼 일부 오래된 웹카메라 제품들중 리눅스에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설치없이 그냥 지원되는 웹카메라 제품들도 왕왕 있습니다. (Ubuntu 14.04 64Bit LTS Linux O/S 설치된 컴퓨터에서 테스트 결과)

상기 <표1>~<표10>내용대로 법령을 개정하신다음 입법화 하시면 국내 웹사이트와 기본적인 응용프로그램을 비롯한 국내 IT콘텐츠들이 여러 컴퓨터 운영체제및 모든 웹브라우저 에 골고루 지원되어 컴퓨터 사용자 취향별로 운영체제를 골라 사용하여 리눅스와 매킨토시경우 바이러스와 스파이웨어를 비롯한 각종 악성코드감염이 잘 안되어(리눅스, 매킨토시 경우 각종 악성코드와 호환이 전혀 안됨.) 여러모로 안전하고 DDos 공격(좀비PC에 의한 분산서비스공격)과 각종 악성 코드에 의한 모든 정보유출과 각종 컴퓨터 오류같은 사이버테러 위험성도 일부 줄일 수 있는 안전한 컴퓨팅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개인이나 일반가정의 경우 자기집에서는 우분투(Ubuntu)리눅스, 이쪽 집에서 MS Windows, 저쪽 집에서 민트(Mint) 리눅스, 요쪽 집에서 페도라(Fedora) 리눅스, 조쪽 집에서 한컴 아세아리눅스, 윗집에서는 오픈 수세 리눅스, 아랫 집에서 매킨토시(Mac) 을 사용하며

기업체(회사)의 경우에도 A기업체에서는 MS Windows, B기업체에서는 페도라(Fedora)리눅스, C기업체에서 우분투(Ubuntu)리눅스, D기업체에서는 한컴 아세아리눅스, E기업체에서 리눅스 민트(Mint), F기업체에서는 매킨토시(Mac)를 사용하여 업무를 볼 수가 있으며

관공서나 공공기관의 어느 한 부서 사무실 경우는 가)직원 업무용PC는 MS-Windows, 나)직원 업무용 PC는 페도라(Fedora)리눅스, 다)직원 업무용PC는 우분투(Ubuntu)리눅스, 라)직원 업무용PC에는 한컴 아세아리눅스, 마)직원 업무용 PC는 리눅스 민트(Mint), 바)직원 업무용 PC는 매킨토시(Mac)를 사용 하기에 관공서와 공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민감한 개인정보와 비밀이 필요한 데이터를 다루기도 하며 예를 들자면 **00공공기관의 공지사항에 긴급 상황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00월00일 00시 00분 현재 어떤 운영체제에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고 해당 운영체제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이 발령이 됐으니 그 해당 운영체제가 설치된 컴퓨터는 즉시 운영체제 보안 업데이트와 백신소프트웨어도 신속히 업데이트 하시고 해당 운영체제가 설치된 컴퓨터는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네트워크로부터 분리시키고 사이버 공격 발령이 해제 될 때까지 다른 운영체제가 설치된 대체용 컴퓨터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긴급 공지사항이 전 직원에게 하달이 되면 하달받은 해당 직원들 경우 긴급 공지사항 대로 대처 하시면서 다른 운영체제가 설치된 대체용 컴퓨터로 업무를 보신다면 각종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맥이나 리눅스의 경우는 보안성이 뛰어나며 보안 업데이트 주기가 MS Windows 운영체제보다 업데이트 주기가 짧고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같은 악성코드의 감염률을 줄일 수 있어 아주 안전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개발 및 보급 추진중인 리눅스 민트(우분투 리눅스에서 파생된 리눅스 운영체제)를 우리 국민들이 사용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국내 모든 홈페이지들과 응용프로그램들이 이 각각의 컴퓨터 운영체제(MS Windows, Linux, Apple Macintosh)와 모든 웹 브라우저에 제한없는 멀티O/S와 멀티 웹브라우저(IE, 엣지, 구글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를 구현함으로써 특정기업 제품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지 않는 진정한 IT 강국의 모범 선도역할 할 수 있고 일반 사용자들은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 제한없이 자유자재로 사용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제작된 컴퓨터와 컴퓨터 주변기기를 비롯한 모든 국내산 디지털기기같은 하드웨어 기기제품들과 응용소프트웨어(응용 애플리케이션)들이 MS Windows를 비롯하여 각종 리눅스, 매킨토시 등에서 제한없이 사용가능 한다면 타 외산 응용 소프트웨어제품보다 여러 컴퓨터 운영체제(MS Windows, Linux, Apple Macintosh)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수출경쟁력을 키울 수 있어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매킨토시나 각종 리눅스에서 원활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법규정과 제도를 신설 해주십시오.

그럼 수고하십시오.